제405회 정례회 '22. 11. 23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
O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3. 제안사유

○ 현재 우리 도 소속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에서 안건 처리 등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,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○ 「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」등 7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안건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·정비(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대진)

가. 제출배경

O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,

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O 「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」등 7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 회는 운영실적이 거의 없어 비상설 형태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.
- 충청북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(안 제1조)는 2021년 이후 위원회 개최실 적이 전무한 상황으로,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.
- 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(안 제2조)는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필요할 경우 자문을 하거나 소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하기 위해 두고 있으나, 운영실적이 거의 없어 위원회가 비상설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임.
 - ※ 위원회 개최 횟수 2021년(1회), 2022년(없음)
-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(안 제3조)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두고 있으나, 자문 성경이고 개최 횟수가 적어 비상설화 방안은 적절한 조치로 보임.
 - ※ 위원회 개최 횟수 2021년(1회), 2022년(1회)
- 충청북도종자위원회(안 제4조)는 직무육성품종의 장려, 품종보호권 등의 처분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, 운영실적이 거의 없어 비상설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고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임.
 - ※ 위원회 개최 횟수 2021년(1회), 2022년(없음)
- 충청북도특화작목육성위원회(안 제5조)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두고 있으나, 개최 횟수 가 적어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

으로 보임.

- ※ 위원회 개최 횟수 2021년(1회), 2022년(1회)
-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자문위원회(안 제6조)는 천연물산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고 있으나, 개최 횟수가 적어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은 적절해 보임.
 - ※ 위원회 개최 횟수 2021년(1회), 2022년(없음)
-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(안 제7조)는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두고 있으나, 개최 횟수가 적어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필요시마다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적절할 것으로 보임.
 - ※ 위원회 개최 횟수 2021년(1회), 2022년(1회)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안건 처리 등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정비(비상설)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